

작성요령

1. 모든 란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선택사항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다만, ①란 및 ⑧란의 성명은 먼저 한글로 쓰고 괄호 안에는 한자로 기재합니다.
2. ②란 및 ⑨란의 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의 유형, 근무기관과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자를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그 밖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⑤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이 해외에 이주한 경우 그 거주여권의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여권 사본 또는 그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⑥란의 근무경력현황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최초임용일·직급(계급)과 임용 후 전보·승진 등에 의한 직급(계급)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근무기관별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임용결격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그 내용이 형벌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 범죄내용 및 징계사유를 기재합니다.
8. 신청인란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 본인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는 상속의 순위에 따라 신청하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을 첨부합니다.
9. ⑪란은 신청인이 퇴직보상금의 수령을 희망하는 체신관서 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 및 계좌번호가 있는 면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